

# ● 건설공사집행규정시행세칙(060201)

제정 2018. 11. 27. 세칙 제491호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 및 적용범위)** ① 이 시행세칙은 건설공사집행규정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 
 ② 이 시행세칙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 2 장 공사 감독

**제2조(공사감독자 배치 및 현장 사무실 운영)** ① 공사감독자 배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최대한 효율성 있게 배치한다.

② 건설현장사무실 설치 및 운영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.

**제3조(공사감독자의 임무 등)** ① 규정 제5조에 의한 공사감독자 임무의 상세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건설공사의 공정, 자재, 품질 및 안전 등에 관한 공사감독업무
  2. 건설공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현지 조사 및 협의업무
  3. 해당사업의 각종 인허가 지원 업무
  4.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에 관한 이행 및 관리 업무
  5.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등 주요사항 발생시 현장 확인 및 검토 업무
  6. 건설공사현장 내 유관기관 병행공사에 관한 협의 및 지원업무
  7. 사업지구 내 문화재 조사 및 발굴에 대한 지원 업무
  8. 건설공사현장의 점검, 검사 및 평가업무 등에 대한 입회, 지원
  9.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타 필요업무 등
- ② 기타 건설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 3 장 시 공 관 리

**제4조(착공계 검토 및 통보)**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 체결 후 수급인으로부터 착공계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에 대해 검토 후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착공계(착공 내역서 포함)
2. 현장대리인계(책임기술자)
3. 안전관리인 선임계(이력서, 재직증명서, 기술자격증사본, 경력확인서)
4. 품질관리인 선임계(이력서, 재직증명서, 기술자격증사본, 경력확인서)
5. 예정공정표 (PERT / CPM을 원칙으로 한다)
6. 현장조직 편성표
7. 품질관리(시험)계획서/안전관리계획서/환경관리계획서
8.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

② 담당부서장은 건설공사가 착수된 경우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라 수급인이 작성한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

③ 담당부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공사착공 및 기재내용 변경 시 30일 이내 건설공사대장을 수급인으로 하여금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(www.kiscon.net)을 통하여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5조(현장대리인 등의 배치)** 담당부서장은 건설공사가 착수된 경우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서 정한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현장대리인 등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6조(하도급승인 등)** ① 담당부서장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 체결통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하며, 하도급계약 내용이 심사를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수급인에게 통보한다.

② 담당부서장은 하도급심사를 위하여 하도급가격

의 적정성, 하도급 공사여건, 하도급업체 신뢰도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.

③ 하도급계약 검토, 관리 및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7조(공사중지)** ① 공사중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.

1. 공사의 이행이 설계도서, 시방서 등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
2.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재해방지 등 긴급한 상황으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
4. 그 밖에 공사 중지가 필요한 사유로서 사장이 정하는 경우

② 공사감독자는 공사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담당부서장에 보고하여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.

**제8조(현장점검 구분 및 방법)** ①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,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점검이 있다.

1. 정기 또는 수시점검
2. 초기점검
3. 정밀안전점검

② 현장점검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9조(공사기한의 연기)** 규정 제12조의 공사기한 연기의 타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수급자의 공사정지
2. 태풍·홍수·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
3.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
4. 기타 사장이 정하는 사항

## 제 4 장 자 재 관 리

**제10조(건설공사용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)** ①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제품을 사용한다.

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 및 검사에 합격된 자재만 건설공사에 사용하도록 수급인에게 지시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지급자재 검수)** ① 자재의 검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납품서
2. 품질, 규격, 성능 및 수량 등
3. 설계서와의 적격여부, 제품자료·견본과의 일치여부
4. 납품기일
5.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
6. 지급자재업체 대표자의 '정보공개동의서'
7. 기타 계약서에 정한 사항

② 자재구매, 승인, 반입 절차, 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## 제 5 장 설 계 변 경

**제12조(설계변경 절차)** ① 설계변경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절차를 이행한다.

1. 설계변경 개요서
2. 설계변경도면, 시방서, 각종계산서(수리, 구조 등) 등
3. 수량산출서
4. 공사비 증감 내역서
5. 기타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에 필요한 서류

② 그 외 설계변경 절차의 세부처리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 6 장 검 사

**제13조(검사의 절차)** ① 규정 제17조의2 제2항에 의한 검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계약서, 설계도서, 기성공정을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등 약정한 내용에 따라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2. 수급인으로부터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담당부서장은 검사지를 임명한다.

3. 검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에 공사감독자 및 현장대리인을 입회하게 하고 계약서,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현장검측을 하여야 한다.
- ②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공사감독 및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, 설계도서,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.

1. 기성검사

- 가. 기성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
- 나.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여부
- 다. 지급자재의 수급현황
- 라. 지하 또는 기초부분이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
- 마. 그 밖에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. 준공검사

- 가. 준공된 건설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
- 나. 건설공사 시공시의 공사감독이 비치한 제반 기록에 대한 검토
- 다. 지급자재의 사용적부 등
- 라.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사항의 시정여부
- 마. 그 밖에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③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,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의 검사는 감독조서와 사전검사 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시행한다.

**제14조(검사조서의 작성)** ① 검사자는 검사완료 후 검사조서를 작성하고, 검사 결과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- ② 기타 검사의 승인, 대가의 지급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## 제 7 장 준공 및 시설물 인수

**제15조(시설물의 인수)** ① 규정 제27조 제2항에 의한 준공검사결과 수급인으로부터 인도받아야 될 목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준공시설물
2. 준공검사 및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
3.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

4.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·후면·측면사진(10“×15”) 각 5매
5. “4”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저장매체(CD나USB)등 5개
6.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, 참여기술자,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에 따른 준공보고서
7. 제품보증서
8. 준공청소계획서
9. 하자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
10.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② 준공보고서는 CD 또는 USB 등 저장매체에 담아 인수받으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16조(준공시설물 관리)** ① 공사는 이관대상 준공시설물의 인수인계 완료시까지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 시설물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.

- ② 준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준공시설물의 일상관리 및 점검
2. 준공시설물 파손원인자 확인 및 원상복구 지시
3. 자연피해로 인한 피해현황 파악 및 복구
4. 도시기반시설 보수 확인
5. 그 밖의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담당부서장은 개발사업 시행에 의하여 설치된 특수시설물(취수장, 가압장, 정수장, 배수펌프장, 하수종말처리시설 등)을 공사 준공 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주체에게 인계할 때까지 관리한다.

- ④ 준공시설물 관리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 8 장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

**제17조(품질관리계획의 수립)** ① 담당부서장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검토한 후 승인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공사감독자 및 담당부서장은 수급인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절하게 시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, 그 확인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③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수립, 검토, 이행확인 등에 대한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18조(품질관리 현장점검)** ① 품질관리·안전방재 주관 부서장은 건설공사 품질향상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대한 시공실태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.

② 점검의 시기, 점검단의 구성, 점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19조(환경관리 등)**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시행 중 수립된 환경·교통·재해영향성평가서상의 저감대책 및 조건사항을 이행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.

② 공사감독자는 영향평가협의 절차를 행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협의기관장 및 인허가승인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때
2. 환경영향 조사결과가 제출된 때
3. 공사착공 또는 준공된 때
4. 3개월 이상 공사중지 하고자 할 경우

③ 폐기물처리 등의 건설현장 환경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 9 장 시 공 평 가

**제20조(평가대상 및 방법)** ① 규정 제38조에 의한 시공평가대상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한다.

② 평가방법 및 절차는 「건설기술진흥법」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③ 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21조(평가의 시기)** ① 시공중평가는 공정을 50%±10% 도달시 시행한다.

② 시공평가는 공정을 90%이상 도달시 시행한다.

**제22조(평가결과에 따른 조치)** ① 건설공사의 시공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시공업체와 부실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시공업체와 부실시

공업체에게 이에 상응하는 이익 또는 불이익의 조치를 할 수 있다

③ 기타 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 10 장 안 전 관 리

**제23조(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)** ① 공사감독자는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 후 승인 하고, 계획의 내용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재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공사감독자는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.

③ 담당부서장은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한 1종, 2종, 3종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경우 수급인으로부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,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동 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사항은 “품질·환경·안전보건경영규정” 및 “건설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(KOSHA18001)업무기준 “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24조(안전점검 사항 등)** ① 안전점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한다.

1.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한 안전시공 이행 여부와 안전에 대한 위해 요소의 종합적인 점검
2. 불완전한 요소의 발견시 직원에 의한 공사중단 및 신속한 보강 요구
3. 취약 사업장의 중점, 반복 점검으로 불안요소 사전 제거
4. 지적사항에 대한 보강완료시까지의 지속적인 점검, 시정

② 점검결과에 따라서 수급인 및 현장중사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계몽을 하여야 한다.

③ 안전점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25조(건설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)** ① 공사가 담당하는 전 건설현장에 「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(KOSHA18001)」에 의거하여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공사는 건설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정착될 수

있도록 시공사,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에 지도·교육 등을 시킬 수 있다.

③ 건설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련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26조(사고의 구분)** 사고는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정도에 따라 중대한 사고와 경미한 사고로 구분한다.

1. 중대한 사고는 다음과 같다.
  - 가. 사망 및 중상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사고
  - 나. 물자피해가 다량 발생한 사고
  - 다. 대외적으로 물의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사고
2. 경미한 사고는 다음과 같다.
  - 가. 경상자가 발생한 사고
  - 나. 물자피해가 경미한 사고
  - 다. 대내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사고

**제27조(사고처리 보고)** 담당 부서장은 사고 발생시 사고처리를 하고,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28조(포상)** ① 담당 부서장은 건설관리업무에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그 포상을 의뢰할 수 있다.

② 건설공사 관련 포상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공평가에 따른 준공포상
2. 기타 유공에 따른 준공포상

③ 포상대상자 선정, 심의, 전달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**제29조(제재조치)** 규정 제56조 제2항에 의한 제재조치는 아래와 같다.

## 제 11 장 격려 및 경고 등

**제30조(격려 및 경고장)** ① 담당부서장 및 안전담당 부서장은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책임자를 경고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품질을 확보 하기 위해 부실공사 경고장을 발급할 수 있다.

② 공사는 품질이 우수한 지구의 현장책임자를 격려함으로써 양질시공 유도과 자발적인 책임시공 풍토조성을 위하여 우수시공현장 격려장을 시행할 수

있다.

③ 격려 및 경고장 발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### 부 칙<18.11.27>

이 세칙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